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209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320926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233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아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233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21. 10. 28. 접수 제32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주장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정주희, 판사 김아영

별지

1) 피고의 주장 취지를 고려하여,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택한다.